

서울 행정 법 원

제 5 행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502 집행정지
신 청 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신길동)
공동대표 이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광경란
변호사 김선희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국수호, 장혁기, 오명신, 김찬규, 반성웅, 남승우,
심현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
한승훈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에 한하여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8. 피신청인에게 약 200명의 규모로 "2016. 11. 30. 13:50부터 20:00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분수대 앞→창성동 별관→경복궁역 4번 출구→경복궁역 6번 출구→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로로 시위(하위 1개 차로 행진)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 중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범위(시간, 장소 등)

1. 시간 : 2016. 11. 30. 13:5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장소와 방법

- 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청운동 주민센터→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로를 이용한 행진(모든 경로는 보도를 이용할 것)
- ②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주민센터 앞 마당과 보도를 이용할 것). 끝.

정본입니다.

2016. 11. 30.

서울 행정법원

법원주사 박완식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